

기간단축동의서

본인은 주식회사 힐링페이퍼의 주주로서 2020. 3. 31. 정기주주총회를 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에 의하여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나 주주 전원 소집절차생략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하기에 본 기간단축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2020. 3. 31.

주주성명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주소	날인